

연구실안전 관리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서대학교 소속기관별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, 환경 안전관계법령에 규정된 책무와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와 연구실 재해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"연구실"이라 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각종 실험, 실습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, 연구실의 시설, 장비, 사용재료, 물질과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.

② "연구활동 종사자"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원, 대학생, 대학원생, 연구원등을 말한다.

③ "연구주체의 장"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.

④ "연구실 안전관리 부서"라 함은 연구실안전환경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⑤ "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"라 함은 연구실 안전 환경관련 실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⑥ "연구실 소속기관"이라 함은 본교 내에서 실험 및 실습을 수행하는 대학(원), 연구기관 및 부속(설) 기관 등을 말하며, "소속기관장"은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⑦ "연구실 책임자"라 함은 해당 연구실에서 실험, 실습 및 연구활동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을 맡은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,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4조(계상기준) ① 다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보험료,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,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, 건강검진,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, 연구활동종사자 및 정밀안전진단,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

③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~2% 안전관리비 예산으로 반영한다.

제5조(집행기준) ① 제4조의 3항에 따라 해당년도의 인건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.

② 집행증빙서류는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·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, 동서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